

심의결과 원안대로가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자
31	16	1984. 7. 19.	총 제 최 참 략

의 안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개정

의결사항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의관계 : 한국은행법 제 7조, 제 72조, 제 73조 및 제 116조,
법규조항 : 은행법 제 30조의 2

제의취지 : 전국은행협회의 개편과 관련하여 금융단협정의 정리가 불가피하여짐에 따라 금융수혜의 독과점 방지와 기업제무구조개선 유도를 위하여 종래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 협정으로 운용하던 주거래은행제도의 기본사항을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으로 흡수하고, 은행법 제 30조의 2에 의거 계열기업군별 금융기관 여신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규정체제를 종래 일반적 지도사항 일거체제에서 불건전여신 또는 투자를 규정하는 체제로 변경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현행 규정중 규제의 필요성이 적은 사항은 가급적 폐지하여 금융기관의 자율운용폭 확대 및 규정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본건 「금융단협정 정리방안 검토를 위한 전연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참고 사항 : 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췌

한국은행법 제 7조

- ① 한국은행에 금융통화위원회(이하 "통화위원회"라 함)를 둔다.
-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
- ③ 금융통화위원회는 제 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 지시를 발할 수 있다.

(이 하 생 략)

한국은행법 제 72조

-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제 69조에 규정된 여신업무에 관한 이율을 정한다.
-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제 69조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여신업무에 관한 기타 표준과 규정을 정할 수 있다.

한국은행법 제 73조

-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인정 할 때에는 한국은행은 제할인, 할인을 받고 저 또는 담보로서 제시한 신용증권의 적격성 여하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융자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생 략)

- 2. 신청한 금융기관이 차금용기관에 비하여 한국은행의 여신에 과도로 의존하여왔거나 또는 불건전한 대출방침과 투자방침을 지속하여 왔다고 인정할 때

-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제 1항 제 2호와 같이 인정되는 금융기관에 허용한 여신에 대하여 할인료이자를 인상할 수 있다.

한국은행법 제 116조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은행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위법행위 또는 비행을 중지시

키게 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은행법 제 30조의 2

-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동일계열기업군 단위로 금융
기관의 대출이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합계액
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동일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의 범위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

金融機關與信運用規程改正(案)

改 正 (案)	現 行	備 考
第 1 章 總 則 第 1 條 (目的) 이 規程은 韓國銀行法 第 3 條, 第 72 條, 第 73 條 및 第 116 條와 銀行法 第 30 條의 2 의 規定에 의거 金融機關의 健全한 與信運用 및 投資指針과 與信管理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章 金融機關의 與信運用 및 投資指針 第 2 條 (與信運用 및 投資指針) 金融機關은 韓國銀行法 第 73 條 第 1 項 第 2 號에서 定하는 不健全한 與信 또는 投資를 招來하지 않도록 다음 事項의 遵守에 努力하여야 한다. 1. 原則적으로 自體調達財源範圍內에서 資金運用 2.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發展을 위한 與信의 地域別 및 部門別 均霑 配分 3. 奢侈性向의 消費나 投機를 助長하는 등 不要不急한 部門에 대한 與信의 抑制 및 企業의 技術開發과 生産性向上을 促進하기 위한 金融의 支援	第 1 條 (目的) 이 規程은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金融機關의 金融資金運用과 支給保證取扱에 있어 遵守 및 留意하여야 할 基本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與信運用指針) ① 金融機關은 原則적으로 自體調達財源範圍內에서 資金을 運用함으로써 健全經營을 維持하여야 한다. ③ 金融機關은 貸出取扱에 있어 貸出金이 地域別로 均霑되게 取扱되도록 努力하는 한편 同一人에 대하여 偏重貸出됨이 없도록 留意하여야 한다. ⑤ 金融機關은 企業의 技術開發, 生産性向上을 促進하기 위한 金融支援에 努力하여야 한다.	從來의 一般指針 列舉體制에서 韓銀法 第 73 條의 不健全 與信判斷基準으로 運用할 수 있는 體制로 轉換

46

改 正 (案)	現 行	備 考
4. 借主의 所要資金規模와 綜合的인 信用의 分析을 통한 適正한 與信의 供給 및 與信取扱 후 용도의 流用與否와 借主의 信用 狀態變更狀況등의 把握을 통한 與信의 效率性과 健全性 維持 5. 非業務用 不動産의 擔保取得에 따른 企業의 不動産取得助長의 防止 및 同業者 相互保證이나 信用保證基金에 의한 信用保證制 등의 活用을 통한 信用에 의한 與信取扱의 擴大	第3條 (制限 및 禁止) ① 金融機關은 奢侈性向의 消費나 投機를 助長하는 등 不要不急한 部門에 대한 與信은 抑制하여야 한다. 第4條 (與信取扱基準) ① 金融機關은 與信取扱時 借主의 財務狀態, 非銀行借入을 포함한 全般的인 金融去來狀況, 事業展望등 綜合的인 信用調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② 金融機關은 資金의 用度, 所要金額, 所要期間 및 償還能力의 正 確한 分析을 통하여 適正한 與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第6條 (事後管理) 金融機關은 與信의 事後管理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1 一定金額以上の 與信에 대하여는 隨時 또는 定期的으로 借主의 事業現況, 資産變動狀況, 信用狀態 등을 調査하고 與信의 效率性과 健全性을 檢討하여야 한다. 第3條 ② 金融機關은 國民生活와 密接한 關聯이 있는 生活必需品를 長期間擔保取得함으로써 需給에 蹉跌을 招來케 하거나 企業의 非 業務用 不動産을 擔保로 取得함으로써 企業의 不動産取得을 助長 하는 일이 없도록 留意하여야 한다. 第4條 ⑤ 金融機關은 與信取扱時 擔保에만 置重하지 말고 信用取扱 의 擴大와 아울러 同業者 相互保證制나 信用保證基金에 의한 信用保證制 등을 利用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47

改正 (案)	現 行	備 考
6. 金融機關與信에 過多하게 依存하는 企業 및 系列企業群에 대한 財務構造 改善과 直接金融의 유도를 통한 過多與信의 抑制 7.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의 擴大, 특히 市中銀行 및 韓國外換銀行은 元貨金融資金貸出 增加額의 35 % 以上, 地方銀行은 55 % 以上을 각각 中小企業者에게 支援 8. 韓國銀行總裁가 定하는 貸出, 投資, 支給保證 및 引受業務의 取扱基準과 用途別 限度의 遵守	第2條 ④ 金融機關은 中小企業에 대한 貸出 및 庶民生活의 安定을 위한 貸出의 擴大에 努力하여야 하며 市中銀行 및 韓國外換銀行은 元貨金融資金貸出 增加額의 35 % 以上, 地方銀行은 55 % 以上을 각각 中小企業者에게 供給하여야 한다. 第2條 ② 金融機關은 國民經濟의 發展에 기여하도록 與信을 運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韓國銀行總裁는 資金別 貸出 또는 用途別 支給保證의 取扱基準을 定할 수 있다. 第3條 ⑤ 韓國銀行總裁는 必要한 경우 金融機關의 家計資金貸出取扱規模를 設定할 수 있다. 第4條 ③ 金融機關은 貸出金을 家計資金과 企業資金, 公共 및 其他資金으로 區分하고 企業資金은 다시 運轉資金과 施設資金으로 細分하여 取扱하여야 한다. ④ 金融機關은 運轉資金取扱時 可及의 限度去來制를 採擇하고 最長 1年을 單位로 限度를 再査定함으로써 適正融資規模가 維持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第5條 ② 金融機關은 運轉資金의 경우 商業어음割引 등 短期間內에 償還되는 資金을 優先的으로 取扱하여야 하며 運轉資金의 貸出期間을 過度하게 長期로 運用함으로써 資金의 回轉率이 低下되는 일이 없도록 留意하여야 한다.	現行金融機關協定の 「企業經營指導」 및 「直接金融誘導」의 本精神 反映 細部事項은 세칙에 反映 예정 細則에 同內容 反映豫定

改 正 (案)	現 行	備 考
第3條 (興信의 禁止) 金融機關이 <별표 1>의 “興信禁止部門”에 대한 興信을 取扱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不健全한 興信으로 본다. 다만, 金融通貨運營委員會가 따로 定하는 規程에 의하여 取扱하는 興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第4條 (金通運委에 대한 報告) 韓國銀行總裁는 第2條 第8號의 規定에 의거 金融機關의 興信取扱基準을 定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金融通貨運營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6條 ② 施設資金의 경우에는 關係證憑書類 및 現物 또는 施設을 確認한 後 計劃된 資金用途에 따라 貸出金을 分割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現物 또는 施設確認에 長期間이 所要되어 適期資金支援이 困難하고 資金流用의 우려가 없다고 判斷되는 경우에는 既成額을 確認할 수 있는 最小限의 書類에 의거 分割支給하고 事後에 關係證憑書類 및 現物 또는 施設을 確認할 수 있다. 第3條 ① ……………韓國銀行總裁는 興信의 抑制 또는 禁止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特定部門 또는 用途를 指定할 수 있다. 「細則」 第3條 (興信禁止部門) ① 「規程」 第3條 第1項에 의거 다음 用途의 興信은 新規取扱할 수 없다. ② 金融通貨運營委員會 또는 韓國銀行總裁가 特別히 定한 規程등에 의하여 取扱하는 興信에 대하여는 第1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新 設 >	細則에 同內容을 反映豫定 現行細則에 定한 事項을 規定으로 移管 49

改 正 (案)	現 行	備 考
第3章 系列企業群 等に 對한 與信管理 第5條 (系列企業群 等に 對한 與信制限) ① 金融機關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系列企業群 및 企業體에 대하여는 與信取扱을 可及的 抑制하고 이의 財務構造改善에 努力하여야 한다. 1. 金融機關 總與信이 200 億원 以上인 <別表 2>의 “同一系列 企業群決定基準”에 의한 系列企業群 2. 第1號의 系列企業群 所屬企業體와 金融機關 總與信이 100 億원 以上이거나 金融機關貸出金이 50 億원 以上인 企業體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系列企業群 및 企業體 (以下 “對象企業群” 및 “對象企業體”라 한다)는 韓國銀行銀行監督院長 (以下 “銀行監督院長”이라 한다)이 選定하여 各 金融機關에 通報한다.	「主去來銀行 與信管理」協定 (第3章에서는 이하 같음) 第1條 (目的) 이 協定은 系列企業群 소속企業體 및 一定額 以上의 與信企業體에 대한 金融去來의 合理化와 綜合的인 與信管理 體제를 確立하고 財務構造 改善을 制度化함으로써 企業資金 供給 및 信用供與效果의 提高와 企業의 健全經營을 誘導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 (對象企業體) ① 協定 適用對象이 되는 企業體 (이하 對象 企業體라 한다.)는 다음 各號의 企業體로 한다. 1. 金融機關 總與信이 200 億원 以上인 別表 1의 基準에 의한 同一系列企業群에 속하는 企業體로서 金融機關總與信이 50 億원 以上인 企業體 (이하 系列企業體라 한다.) 2. 金融機關 總與信이 100 億원 以上이거나 貸出金이 50 億원 以上인 企業體 (以下 非系列企業體라 한다.) 第4條 (對象企業體의 選定 및 除外) ① 韓國銀行 銀行監督院長 (以下 銀行監督院長이라 한다.)은 매년 12月末日을 基準으로 前條에 해당하는 新規對象企業體를 選定한다. ③ 銀行監督院長은 前第1項 및 第2項의 規程에 의한 對象企業體의 選定 또는 除外結果를 全金融機關에 通報한다.	「主去來銀行 與信管理」 協定の 基本事項을 規程化

改 正 (案)	現 行	備 考
第 6 條 (對象企業群에 대한 與信限度) ① 銀行監督院長은 對象企業群에 대한 與信偏重을 시정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한 경우에는 金融機關 總貸出金增加率範圍內에서 對象企業群別로 金融機關의 貸出金增加限度를 設定할 수 있다. ② 銀行監督院長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限度를 設定하였을 경우에는 同 限度의 設定內容과 이의 運用狀況을 金融通貨運營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7 條 (與信去來銀行) ① 銀行監督院長은 對象企業群 및 對象企業體에 대한 效率의인 與信管理를 위하여 去來銀行 (또는 去來營業店)의 수를 제한하거나 주된 去來銀行 (以下 “主去來銀行”이라 한다)을 定할 수 있다. 2 主去來銀行은 對象企業體에 대한 現地金融을 包含한 全體與信狀況을 綜合的으로 管理하여야 하며 金融機關은 對象企業體에 대한 企業情報를 入手한 때에는 이를 當該 主去來銀行에 通報하여야 한다. 第 8 條 (與信의 範圍) 第 5 條 내지 第 7 條의 規定에 의한 總與信과 貸出金은 全金融機關 (韓國産業銀行 및 韓國輸出入銀行을 包含한다)이 取扱한 것을 말하며 그 範圍는 다음과 같다.	第 13 條 (與信去來營業店의 制限 및 指定運用) 第 8 條 (非系列企業體의 主去來銀行) 第 9 條 (系列企業群의 主去來銀行) 第 10 條 (系列企業體의 主去來銀行) 第 12 條 (副去來銀行의 指定) 第 29 條 (企業情報交換) 모든 金融機關은 對象企業體에 관한 企業情報를 入手하였을 때에는 이를 當該 企業體의 主去來銀行 (系列企業體인 경우에는 當該企業體의 主去來銀行과 系列企業群의 主去來銀行 包含)에 通報하여야 한다. 第 3 條 ② 前項의 總與信이라함은 다음 各號의 合計額을 말한다.	銀行法 第 30 條의 2 에 의거 系列企業群에 대한 與信을 規制할 수 있도록 明示 51

改 正 (案)	現 行	備 考
1. 總與信：貸出金，財政借款에 의한 政府의 直接貸出金，支給保證， 先輸出契約書에 의한 輸出換어음 買入 2. 貸出金：원貨 및 外貨貸出金，內國輸入「유산스」, 支給保證代支給金 第9條(企業財務構造 改善 誘導) ① 主去來銀行은 對象企業群 및 對象企業體의 全般的인 借入金狀況·등을 감안하여 銀行監督院長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對象企業群 및 對象企業體의 經營을 指導함으로써 이의 財務構造改善을 誘導하여야 한다. 1. <別表3>의 “業種別 自己資本 指導比率”을 지표로 하는 自己資本의 충실화 誘導 2. 무리한 企業新設, 買入 또는 投資의 制限 및 系列企業의 整理 誘導 3. 不要不急한 不動産取得의 抑制 및 非業務用 不動産의 處分誘導 4. 무리한 借款導入의 抑制 5. 年間 資金調達 및 運用에 관한 綜合資金需給計劃의 協議 6. 企業經營分析 및 經營諮問을 통한 健全經營 誘導 7. 其他 企業財務構造改善을 위하여 銀行監督院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經營指導 ② 銀行監督院長은 企業體의 特性, 또는 與信規模에 비추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企業體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의 全部 또는 一部를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主去來銀行은 第1項의 시행에 따른 諸般措置를 遵守하지 아니하는 企業體에 대하여 與信의 중단 등 必要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1. 貸出金 2. 財政借款에 의한 政府 直接貸出金 3. 支給保證 4. 先輸出契約書에 의한 輸出換어음 買入 第14條(財務構造의 改善指導) 第15條(決算協議) 第16條(企業新設, 買入 또는 出資承認) 第17條(投資禁止) 第18條(投資制限) 第19條(不動産의 取得承認 및 處分促求) 第20條(不動産取得禁止) 第24條(借款支給保證) 第21條(不動産取得制限) 第26條(綜合資金需給計劃 協議) 第25條(企業經營分析) 第32條(適用排除 對象企業體) 第33條(對象外 系列企業體에 대한 措置) 第22條(投資 및 不動産取得의 禁止, 制限業體에 대한 예외 認定의 制限) 第31條(制 裁)	

改 正 (案)	現 行	備 考
第 4 章 補 則 第 10 條 (制裁) ① 韓國銀行總裁는 이 規程 및 이의 시행을 위한 細則 또는 지시를 違反하는 金融機關에 대하여는 韓國銀行法 第 72 條 및 第 73 條의 規定에 의거 韓國銀行의 再割引 및 貸出을 制限 또는 거절하거나 與信에 대하여 韓國銀行 最高與信利率 範圍內에서 別칭금리를 適用할 수 있으며 關聯企業體의 어음 등에 대한 적격성을 制限할 수 있다. ② 銀行監督院長은 第 3 章의 規定과 이의 施行을 위한 規程 또는 지시를 違反하는 金融機關에 대하여는 必要한 制裁措置를 취할 수 있으며 第 3 章의 規定과 이의 施行을 위한 戒止措置를 遵守하지 아니하는 金融機關에 대하여 韓國銀行總裁에게 第 1 項의 制裁措置를 요청할 수 있다. 第 11 條 (報告) 金融機關은 韓國銀行總裁와 銀行監督院長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 規程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을 報告하여야 한다. 第 12 條 (委任規定) 이 規程의 施行에 必要한 細部事項은 韓國銀行總裁가 定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第 5 條 내지 第 9 條의 施行을 위해 必要한 事項은 銀行監督院長이 定한다.	< 新 設 > 第 8 條 (報告) 金融機關은 韓國銀行總裁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을 별도 定하는 양식에 의하여 韓國銀行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9 條 (委任規定) 이 規程施行에 必要한 細部事項은 韓國銀行總裁가 따로 定한다.	規程違反時 韓銀法 第 72 , 73 條에 대한 制裁를 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規程의 實效性 確保

改 正 (案)	現 行	備 考
(削 除) (") (") (")	第3條 ③金融機關이 담보로 取得하는 株式은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된 株式에 한하며 質權設定登錄 등을 통하여 債權補填의 確實性を 기하여야 한다. ④金融機關은 商業어음 割引取扱에 있어서 단순히 資金融通만을 目的으로 發行된 어음을 割引하여서는 안된다. 第5條 (貸出期間) ①金融機關의 貸出期間은 10年 以內로 하며 銀行法 第21條의 規定에 따라 約定期間이 1年을 超過하는 長期貸出金은 長期財源의 調達範圍內에서 取扱하여야 한다. ②貸出期間이 1年을 超過하는 貸出金의 경우에는 年2回 以上の 定期分割償還條件으로 約定하여야 하며 約定期間の 1/3 範圍內에서 거치기간을 認定할 수 있다. 第6條 ③延滯가 發生한 경우에는 最長 6月 以內에 擔保權 行使에 着手하여야 한다. ④延滯貸出金 및 支給保證代支給金 保有者에 대하여는 新規與信을 取扱할 수 없다. 다만, 迴轉資金 또는 短期支給保證으로서 부득이하다고 認定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第7條 (企業經營指導) 金融機關은 與信取扱時 다음과 같이 借主企業의 健全經營을 誘導하여야 한다. 1. 借主企業 및 系列企業群의 不動産取得의 抑制와 過多保有 不動産의 處分促進 誘導	第3章에 同 內容이 反映됨.

改 正 (案)	現 行	備 考
附 則 1. (施行日) 이 規程은 1984. 7. 23. 부터 施行한다. 2. (經過措置) 終前의 關聯規程(「主去來銀行의 與信管理」協定 包含)에 의한 諸般措置中 이 規程에 依據 規制되는 사항은 이 規程에 의하여 施行된 것으로 본다.	2. 借主企業 및 系列企業群의 무리한 企業擴張抑制와 系列企業의 整理 誘導 3. 借主企業의 財務狀態에 비추어 過多한 經費의 支出抑制를 통한 經費節減 誘導 4. 借主企業의 增資 또는 私債發行을 통한 直接金融 誘導 5. 기타 借主企業의 財務構造改善을 위해 必要하다고 인정되는 事項의 指導	55

改 正 (案)	現 行	備 考																																														
<別表 1 > 興 信 禁 止 部 門 1. (現 行 과 同 一) 2. (現 行 과 同 一) 3. 다음의 業種에 대한 興信 <table><tr><th>韓國標準産業分類表上 分類番號</th><th>業 種 名</th></tr><tr><td>39049 中</td><td>不健全娛樂器具 製造業</td></tr><tr><td>6312</td><td>酒店業 (63129 該當業種 除外)</td></tr><tr><td>63132</td><td>茶 房 業</td></tr><tr><td>81026</td><td>典 當 業</td></tr><tr><td>83031</td><td>不動産 仲介業</td></tr><tr><td>94939 中</td><td>「댄스」홀, 「댄스」敎習所</td></tr><tr><td>94960</td><td>賭博場 運營業</td></tr><tr><td>9591 中</td><td>奢侈性理髮所, 美粧院</td></tr><tr><td>95994</td><td>浴湯業 (大衆湯 除外)</td></tr><tr><td>95999 中</td><td>非醫療性格의 自營按摩業</td></tr></table>	韓國標準産業分類表上 分類番號	業 種 名	39049 中	不健全娛樂器具 製造業	6312	酒店業 (63129 該當業種 除外)	63132	茶 房 業	81026	典 當 業	83031	不動産 仲介業	94939 中	「댄스」홀, 「댄스」敎習所	94960	賭博場 運營業	9591 中	奢侈性理髮所, 美粧院	95994	浴湯業 (大衆湯 除外)	95999 中	非醫療性格의 自營按摩業	1. 土地의 買入 다만, 庶民住宅建設用, 6月以內에 着工될 工場建設用, 實需要者의 農地買入用 및 非營利法人의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買入하는 社宅建設用은 除外한다. 2. 世帶富 170 ㎡을 超過하는 住宅 (「아파트」 包含) 의 建設 또는 買入 3. 다음의 業種에 대한 興信 <table><tr><th>韓國標準産業分類表上 分類番號</th><th>業 種 名</th></tr><tr><td>39099 中</td><td>不健全娛樂器具 製造業</td></tr><tr><td>63121</td><td>料 亭 業</td></tr><tr><td>63122</td><td>「카바레」</td></tr><tr><td>63140</td><td>茶 房 業</td></tr><tr><td>81026</td><td>典 當 業</td></tr><tr><td>83030</td><td>不動産 仲介業</td></tr><tr><td>94939 中</td><td>「댄스」홀, 「댄스」敎習所</td></tr><tr><td>94960</td><td>賭博場 運營業</td></tr><tr><td>95994 中</td><td>「터키」湯, 「사우나」湯, 獨 湯</td></tr><tr><td>9591 中</td><td>奢侈性理髮所, 美粧院</td></tr><tr><td>95999 中</td><td>非醫療性格의 自營按摩業</td></tr></table>	韓國標準産業分類表上 分類番號	業 種 名	39099 中	不健全娛樂器具 製造業	63121	料 亭 業	63122	「카바레」	63140	茶 房 業	81026	典 當 業	83030	不動産 仲介業	94939 中	「댄스」홀, 「댄스」敎習所	94960	賭博場 運營業	95994 中	「터키」湯, 「사우나」湯, 獨 湯	9591 中	奢侈性理髮所, 美粧院	95999 中	非醫療性格의 自營按摩業	84.2.1. 韓國標準産業分類表 改正으로 因한 調整
韓國標準産業分類表上 分類番號	業 種 名																																															
39049 中	不健全娛樂器具 製造業																																															
6312	酒店業 (63129 該當業種 除外)																																															
63132	茶 房 業																																															
81026	典 當 業																																															
83031	不動産 仲介業																																															
94939 中	「댄스」홀, 「댄스」敎習所																																															
94960	賭博場 運營業																																															
9591 中	奢侈性理髮所, 美粧院																																															
95994	浴湯業 (大衆湯 除外)																																															
95999 中	非醫療性格의 自營按摩業																																															
韓國標準産業分類表上 分類番號	業 種 名																																															
39099 中	不健全娛樂器具 製造業																																															
63121	料 亭 業																																															
63122	「카바레」																																															
63140	茶 房 業																																															
81026	典 當 業																																															
83030	不動産 仲介業																																															
94939 中	「댄스」홀, 「댄스」敎習所																																															
94960	賭博場 運營業																																															
95994 中	「터키」湯, 「사우나」湯, 獨 湯																																															
9591 中	奢侈性理髮所, 美粧院																																															
95999 中	非醫療性格의 自營按摩業																																															

同一系列企業群決定基準

<別表2>

區 分	內 容
同一系列企業群의 範圍	同一人(自然人 또는 法人)이 事實上 支配하는 모 法人企業과 非法人企業(個人企業) 100 分의 30 을 超
I. 法 人 企 業	1. 다음에 계기하는 方法으로 同一人의 그 法人企業에 대한 株式持分(出資持分을 包含한다. 以下 同一)이 100 分의 30 을 超하고 事實上 그 法人企業을 支配하는 경우 가. 自己의 名義로 株式을 所有하는 경우 나. 親族 其他 特殊關係人의 名義로 株式을 所有하는 경우 2. 同一人의 그 法人企業에 對한 株式持分이 100 分의 30 以下이나 다음 各號의 1 에 該當하는 方法으로 同一人이 그 法人企業을 事實上 支配하는 경우 가. 同一人의 親族 其他 特殊關係人이 該當企業體의 經營에 直接 參與하고 있는 경우 나. 企業公開로 株式分散이 이루어져 支配株式이 100 分의 30 以下이지만 大株主로서 社會 通念上 當該企業體를 事實上 支配하고 있다고 認定되는 경우
II. 非 法 人 企 業 (個人企業)	다음에 계기하는 方法으로 同一人이 그 個人企業의 經營을 事實上 支配하는 경우 1. 自己의 名義로 그 企業財産의 主要部分을 所有하는 경우 2. 親族 其他 特殊關係人이 그 企業財産의 主要部分을 所有하는 경우 3. 自己나 親族이 外部에 對하여 그 企業을 代表하는 경우 4. 表面上 第三者의 名義로 經營하고 있으나 同一人이 그 企業의 經營을 事實上 支配한다고 銀行監督院長이 認定하는 경우
親 族 의 範 圍	1. 配偶者(事實上의 婚姻關係에 있는 자를 包含한다.) 2. 8촌 以內의 血族 3. 4촌 以內의 姻戚. 다만, 銀行監督院長이 株式持分 또는 財産의 所有關係 등에 비추어 同一系列의 企業을 支配한다고 認定할 수 없는 血族 또는 姻戚은 親族의 範圍에서 除外
特 殊 關 係 人 의 範 圍	1. 自己 또는 親族이 各各 또는 合計하여 100 分의 30 을 超過하여 出資하고 있는 法人 및 同一法人의 任員 2. 自己의 使用人이나 使用人 以外의 者로서 自己로부터 받은 金錢 其他의 財産에 의하여 生計를 維持하는 者와 그 者의 親族으로서 이러한 者와 生計를 함께 하는 者 3. 自己 또는 親族이 財産을 出捐하였거나 任員이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事實上 支配하고 있는 非營利法人, 組合, 團體

<別表 3>

業 種 別 自 己 資 本 指 導 比 率

(單位, %)

業 種	自 己 資 本 指 導 比 率	業 種	自 己 資 本 指 導 比 率
I. 製 造 業		18. 電 氣 및 電 子 部 品	28.4
1. 飲 食 料 品	20.0	19. 電 氣 機 械 器 具	22.8
2. 織 維	17.0	20. 運 輸 裝 備	25.0
3. 衣 服 類, 가 죽 신 발 類	15.0	21. 其 他 機 械 器 具	32.0
4. 나 무 및 나 무 製 品	15.0	22. 其 他 製 造 業	23.8
5. 종 이 및 印 刷 出 版	26.0	II. 水 産 業	15.0
6. 産 業 用 化 學	31.0	III. 鑛 業	27.0
7. 醫 藥 品	36.6	IV. 建 設 業	23.0
8. 其 他 化 學 製 品	30.3	V. 一 般 都 賣 業	23.0
9. 石 油 精 製	20.2	VI. 貿 易 業	16.5
10. 燃 炭	24.0	VII. 綜 合 貿 易 商 社	15.0
11. 고 무 製 品	18.0	VIII. 小 賣 業	25.0
12. 프 라 스 틱 製 品	30.0	IX. 宿 泊 業	40.0
13. 非 金 屬 鑛 物	25.0	X. 陸 上 運 輸	25.0
14. 第 1 次 鐵 鋼	23.7	XI. 水 上 運 輸	17.9
15. 第 1 次 非 鐵	24.0	XII. 航 空 運 輸	26.0
16. 組 立 金 屬 製 品	22.0	XIII. 不 動 産 및 企 業 用 役 業	34.5
17. 機 械	18.5	XIV. 서 어 비 스 業	30.0

註:多數業種을 營爲하는 企業의 경우에는 賣出額比重이 가장 높은 業種으로 分類할 것.